

# 태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태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임지: 모든 수종에 대한 벌채허가(Harvesting per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li> </ul> </li> <li>- 공유지(보전임지 제외) : 제한수종에 대한 벌채허가(Harvesting per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li> </ul> </li> <li>- 사유지: Teak(<i>Tectona grandis</i>), Yang(<i>Dipterocarpus alatus</i>), Rosewood (<i>Dalbergia</i> spp.) 수종에 대한 벌채허가(Harvesting per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li> </ul> </li> </ul>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7.10월 기준 산림 5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GGL 인증서	첨부 1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자발적 인증 절차 인증서(Voluntary Certification Process Certificate) : 목재의 합법성 증명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원자재 설명서, 품목 사진 포함하여 신청 * [발급기관: Royal Forestry Department] - Removal Pass : 수수료 납부, 담당자 인감, 일련번호, 연도 표기 - 고무나무의 경우 : 태국산 고무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원산지가 태국산 고무나무 100%임이 명시된 WOOD CERTIFICATE 등)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CERTIFICATE**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   
Field of attention:  
**Biofuels & Biomass**  
**GGL01: Chain of Custody and processing standards**  
Issued to:  
  
**Project in: THAILAND**  
Standard:  
**Green Gold Label S1 - Chain of Custody and Processing standard**  
**Valid until: 25 September 2023**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B.V. declares to have inspected the unit(s), and/or product(s) of the above mentioned client, and have found them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mentioned above.  
This certificate covers the unit(s), and/or product(s) as mentioned in the authenticated annex of this certificate.  
This certificate remains in force until further notice, provided that the client continues to meet the conditions as laid down in the client contract with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and verified in annual inspections by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Date of certification:  
26 September 2018  
Place and date of issue:  
Zwolle, 26 September 2018





Declared by:

인증사 담당자 서명

page 1/2

[첨부 1-2] GGL 인증서



Annex to CERTIFICATE No.   
 REGISTRATION   
 Biofuels & Biomass  
 GGL01: Chain of Custody and processing standards

A product certificate (certifying compliance to GGLS04) is required with every shipment of GGL01 certified material. This certificate covers the following product(s) which meet(s) the criteria of the GGLS01 - Chain of Custody and Processing standard:

Certified products

Product no.	Name of product	Processing unit(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his certificate, referred to in the licensee contract as scope certificate, covers the following processing unit(s) which meet(s) the criteria of the GGLS01 - Chain of Custody and Processing standard:

Processing units

Unit no.	Name of unit	Unit ref.	Address	Process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his certificate including the annex remains property of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and can be withdrawn in case of terminations as mentioned in the licensee contract, or in case changes or deviations of the above mentioned data occur. The licensee is obliged to inform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immediately of any changes in the above mentioned data. Only an original and signed certificate is valid.

Date of certification:  
26 September 2018

Place and date of issue:  
Zwolle, 26 September 2018



인증사 담당자 서명

This certificate cannot be used as guarantee certificate for delivered goods!

# 태국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산림 현황

태국의 산림은 16,399,000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sup>1)</sup> 산림의 기능별로는 원시림(Primary),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로 구분됩니다.<sup>2)</sup>

- 원시림 : 6,726,000 ha (41.0%)
- 기타 천연갱신림 : 5,687,000 ha (34.7%)
- 조림지 : 3,986,000 ha (24.3%)

태국은 산림법(Forest Act), 산림 보전법(Forest Reserve Act), 조림법(Forest Plantation Act), 산림보호법(Forest Conservation Law)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내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에서 산림의 이용 및 목재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림에 대한 벌채, 운송, 가공, 무역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야생동식물 보존과(Department of National Parks, Wildlife and Plant Conservation)에서는 보호구역과 보호 수종(CITES 수종 포함)에 대한 허가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림국 사무소에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sup>3)</sup>

산림은 토지법(Land Code)에 근거하여 사유지(Private land), 공공 또는 국유지(Public or government land)로 구분되며 소유주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합법적 소유 사항과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림법(Forest Act)제6, 7, 8절에서는 벌채 제한 수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산림보호구역(National Forest Reserves)의 모든 수종에 대한 벌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벌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 발급 필요)

1) The Global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lobal Resources Assessment 2015, p4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Timber Flows and Their Control in Thailand, p20, www.euflegt.efi.int

##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태국에서 합법적인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유림과 허용된 훼손지(Permitted degraded forest land)에서 법적토지보유권(Legal Land tenure)을 기반으로 조림을 해야 합니다. 태국의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은 천연림(Natural Forest)의 보호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천연림에서의 벌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sup>4)</sup>

태국에서 벌채되는 목재 자원은 조림지와 천연림에서 벌채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산재는 조림지에서 벌채된 경우이며 1989년 이전까지 인정하던 천연림에서의 벌채목에 대한 판매권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으면서 산림법을 통해 보호 구역내의 산림에 대한 벌채 허가를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사유지 : 사유지에서 조림된 목재의 경우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유자는 조림, 벌채, 생산, 가공, 무역에 대한 허가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Teak(*Tectona grandis*), Yang(*Dipterocarpus alatus*), Rosewood(*Dalbergia spp.*) 수종에 대한 벌채, 운송, 가공, 무역을 할 경우에는 산림법(Forest Act)에 근거하여 별도의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유지/공유지 : 국유지의 경우 모든 제한 수종과 천연림 내의 모든 수종에 대하여 벌채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존산림(National Forest Reserve)의 경우에는 천연림 내에서 자라는 수종을 포함한 모든 수종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화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허가를 발급받아 조림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조림지(Registered Forest Plantation) :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조림법(Forest Plantation Act)에 따라 제한된 수종의 상업적 목적으로 조림이 허가되었습니다. 2015년 조림법이 58개 수종에 대한 조림 허가 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림 대상지는 사유림, 보호림으로 관리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인, 조합, 회사, 지역공공기관, 지역산림기관이 가능합니다.

산림법(Forest Act)에 따른 벌채 허가(Harvesting permit)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임지(National Forest Reserves) : 모든 수종
- 공유지(Public land, 보전임지 제외) : 제한 수종

4) A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of Thailand, p5-6, [www.euflegt.efi.int/documents/-/asset\\_publisher/ltjOjWpjttO1/document/id30619](http://www.euflegt.efi.int/documents/-/asset_publisher/ltjOjWpjttO1/document/id30619)

- 사유지(Private land) : Teak(*Tectona grandis*), Yang(*Dipterocarpus alatus*), Rosewood (*Dalbergia spp.*)

조림인증서(Plantation certificate, (Por Sor 3) 소유자는 조림법(Forest Plantation Act)에 근거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림을 실시하기 전 등록된 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는 조림관리자의 표식(Private seal)이 표기되어야 하며 운송자는 조림목재에 대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벌채허가서(Certificate of Cutting/Felling)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벌채 전 조림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식 등록(Seal Registration Sor Por 8, Seal Certificate Sor Por 9)
- 벌채 통지 인증서(Certificate of Cutting/Felling Notification Sor Por 13) 제출
- 조림 목재 포장명세서(Plantation Timber Packing List Sor Por 15) 등록

등록된 조림지에서 생산된 원목, 제재목, 목재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자는 조림 목재 포장명세서(Plantation Timber Packing List, Sor Por 15), 벌채 통지 인증서(Certificate of Cutting/Felling Notification, Sor Por 13)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조림이 공공지역에서 벌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수수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각각의 모든 제품에 대한 수수료 납부, 담당자의 인감, 일련번호, 연도를 표기하고 운송 전 운송자는 운송허가서(Removal pass)를 발급받게 됩니다. 지역별 담당자는 목재에 표기된 마크와 수수료 납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벌채와 가공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

- Forestry Act
- Ministerial Regulation on the Processing and Possession of Sawn Timber
- Ministerial Decree on the Control of Rubberwood Processing Facility using Mechanical Equipment
- Royal Forest Department Announcement on Assigning Competent officers responsible for Permission of Commercial Timber Processing, Sawmill, and Trading Facility

[벌채허가]

- Forest Plantation Act
- National Forest Reserves
- Ministerial Regulation on the Logging in National Forest Reserve

- Royal Forest Department Regulation on Logging Permission in National Forest Reserve in Royal Forest Department Handbook on Permission related to Timber and Forest Product
- Royal Forest Department's Memo on the Implementation Guideline on Logging In National Forest Reserve
- Ministerial Regulation on the Request and Permission to Utilize Forest Estate
- Ministerial Regulation on the Restricted Timber Harvesting in Royal Forest Department Handbook on Permission related to Timber and Forest Products
- Ministerial Order No. 17 on the Permission of Teak and Yang Timber on Private Land, in Royal Forest Department Handbook on Permission related to Timber and Forest Product
- Leader of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s Order No. 31 on the Amendment of the Forest Act
- Royal Decree on Restricted Timber Species
- Royal Decree on Restricted Forest Product Species

국가 보존림의 경우 조림을 승인하기 전 전체 조림지역의 5% 미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조림 자격을 소자한 자는 조림 시작 전 적어도 6개월 전까지 승인 기관에 연간 조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조림 경영 관련 정보와 자원조사(inventory)를 포함하여 연간 관리 보고서(Por Sor 32)를 당해연도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지역 승인 기관에서는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내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으로 30일 이내에 표본점(Plot) 크기, 수종, 수량, 생존율, 경계, 유지, 간벌, 임도 건설, 병해충 방지, 방화대(fire break)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 보전임지내의 벌채와 제한된 수종에 관한 각료규정(Ministerial Regulation on the Logging in National Forest Reserve)과 Ministerial Regulation on Restricted Timber)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조림지 관리자는 조림된 지역의 벌채를 허가 받으려는 경우 벌채구역에 대한 지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전임지 외 사유지 벌채허가]

- Category (A) 제한 수종 : Harvesting Permit
- Category (B) 제한 수종 : Ministerial Authorization
- 미제한 수종 : 허가사항 불필요
- 산림 승인 :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내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 허가



[보전임지 벌채허가]

- Category (A) 제한 수종 : Harvesting Permit
- Category (B) 제한 수종 : Ministerial Authorisation
- 미제한 수종 : Harvesting permit Por Sor 2

[산림조림법 내 등록된 조림지 벌채허가]

- 표식 등록증(Seal Registration, Sor Por 8)
- 표식 인증서(Seal Certificate, Sor Por 9)
- 벌채 통지인증서(Certificate of Cutting/Felling Notification, Sor Por 13)
- 조림 목재 포장명세서(Plantation Timber packing list, Sor Por 15)

[사유지 벌채허가]

- Teak(*Tectona grandis*), Yang(*Dipterocarpus alatus*), Rosewood(*Dalbergia spp.*) : Harvesting permit
- Category (A) 제한수종을 외 : 허가사항 불필요
- Category (B) 제한 수종 : 허가사항 불필요
- 미제한 수종 : 허가사항 불필요

[산림전환]

-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내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 허가

[산림작업자 및 벌채업자]

- 1마력 이상 전기 체인톱 소유자 및 운영 자격증(Electric Chainsaw Operator License Lor Sor 3)
- 1마력 이상의 전기 체인톱 제작 자격증(Electric Chainsaw Manufacturer License Lor Sor 5)
- 1마력 이상의 전기 체인톱 수입자격증(Electric Chainsaw Importer License Lor Sor 7)
- 1마력 이상의 전기 체인톱 수리자격증(Electric Chainsaw Repair License for Business Lor Sor 17)
- 타지역 전기톱 소유자 및 자격자에 대한 타지역 작업 허가(Electric Chainsaw Temporary Relocation Permit Lor Sor 13)

[운송자]

- 벌채 통지인증서(Certificate of Cutting/Felling Notification, Sor Por 13)
- 조립 목재 포장명세서(Plantation Timber Packing List, Sor Por 15)
- 목재표식(Timber mark/tag)

##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가격 및 거래 자격을 소지자로부터 현장에서 발행된 제재목인증서-하얀색 서식(white-form Sawn Timber Certificate)은 24시간 동안 유효하며 품목, 수종, 크기, 용량, Seal, 표시사항을 포함합니다. 제재목인증서-노란색 서식(Yellow-form Sawn Timber Certificate)은 고무나무와 13가지 조립 수종에 대한 가공업체로부터 발행되어 제재목과 목재칩 생산을 위하여 동봉되며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제한 목재제품 거래자는 제한된 목재제품에 대한 인증서(Restricted Wood Product Certificate)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품목, 수종, 크기, 수량, 용량, 표시사항이 포함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공자]

- 가공업체 허가서(Mechanical/Manual Processing Facility's License)
- 제재목 유통업체 허가서(Sawn Timber Trading Facility's License)
- 제한목재제품 유통등록증(Restricted Wood Product Trader's License)
- 상업용 목재 가공허가(Commercial Timber Processing's Permit)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비상업용 목재 가공허가(Non-Commercial Timber Processing's Permit)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가공업자는 업체로 유입되는 원자재 또는 제품의 크기, 용적, 수량, 품질, 표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개별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업체로 유입되기 전 원목의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경우 지역별 담당자는 목재제품의 표시사항과 수입신고 영수증(Import duty receipt),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견적서(invoice),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으로부터 발행된 수출허가서(export licence)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별 담당자가 검사 증명을 위한 표식(personal seal)을 표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사항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제품, 수종, 수량, 용적, 원목의 개수와 검사자의 표식(personal seal) 정보를 포함합니다.

각 운송 차량은 목재와 목재제품의 운송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에 위치한 검사소(check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허가서(Removal Pass) 원본의 기한(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소(check point)에서 재발급 할 수 있으며 검사소(packing list) 첨부서류로는 수수료 납부 서류가 있습니다.

운송자는 도착지에 도착후 5일 이내에 검사소(checkpoint)에 알려야 하며 검사소(checkpoint) 담당자는 문서와 운송 서류를 검토하여 수수료 납부 사항을 확인 후 표식(personal seal)을 표시하고 운송 문서에 서명합니다.

1차 가공업체와 공급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금지된 수종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가공의 경우에도 별도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가공 및 유통 무역을 위한 자격은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내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에서 연간 자격으로 부여되며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원목을 취급하는 1차 가공 및 유통 업체는 원료에 대한 수종, 용량, 수량, 표시사항, 원산지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원자재 입고 전 확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자재에서 제품 생산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연간 자격 갱신을 위한 신청 시 승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송을 위한 자격은 제재목인증(Sawn Timber Certificate)과 제한된 목재제품 인증(Restricted wood product certificate)이 발급되며 업체간 탁송시 송부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고무나무와 13종의 조립 수종에 대한 운송 문서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자격을 소지한 당사자는 제재목인증(Sawn Timber Certificate)과 제한된 목재제품 인증(Restricted Wood Product Certificate Book)에 관한 사항을 천연자원·환경부 산림국에 등록하고 사용 전 해당 기관 담당자의 서명과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제재목인증(Sawn Timber Certificate)과 제한된 목재제품 인증(Restricted Wood Product Certificate)은 품목, 수종, 크기, 수량, 용적, 목재 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증서 소지자는 2개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최소 2년간 현장 보관과 자격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규정(Customs Notification 38/2543)에 따라 다음의 통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5)</sup>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견적서(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Certification)

---

5) Timber Flows and Their Control in Thailand, p22, [www.euflegt.efi.int](http://www.euflegt.efi.int)

또한, 모든 수입업자는 CITES(Conv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에 해당하는 수종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발행된 CITES 수출허가서(Export Permit)를 확인하여야 합니다.<sup>6)</sup>

CITES에 해당하는 수종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서 또는 기록이 요구됩니다.

[동물상(Fauna)]

- 보호 종 또는 비보호 종에 대한 CITES permit
- 비 CITES 수생동물상(Aquatic fauna)인증서

[식물군(Flora)]

- CITES 허가서(permit)
- CITES 수종 생산 등록증

[세관]

- 합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수입 허가증
  - \* 수출국으로부터 발행된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 \* 수출국으로부터 발행된 검역인증서(Phytosanitary Certificate)  
(Austria, Belgium, Denmark, Canada, Germany, Italy, Luxemburge, Netherlands, Republic of Korea, Singapore, Sweden, Switzerland)
  - \* Certificate of Origin(CITES Appendix III species)
  - \* 수출국의 정부로부터 발행된 인증서
- 수송허가증(Transit permit, 재수출의 경우)

태국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48장(Forest Act Section 48)에 따라 연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에서 재고량, 생산 현황 기록을 점검합니다.<sup>7)</sup>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55,741 ha이며 CoC 인증은 135 건입니

6) Timber Flows and Their Control in Thailand, p27, [www.euflegt.efi.int](http://www.euflegt.efi.int)

7) Timber Flows and Their Control in Thailand, p21, [www.euflegt.efi.int](http://www.euflegt.efi.int)

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http://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이며 CcC 인증은 15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http://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4호)

태국에서 주로 수출되는 목재제품은 제재목, 보드류, 종이, 펄프, 가구 등이 있습니다. 산림부(Royal Forest Department)에서는 합법성 증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 인증 절차(Voluntary Certification Proces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수출 전 원산지 증명서, 원자재 설명서, 품목 사진을 포함한 신청서를 가까운 지역 산림국 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는 제출 문서를 검토하고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합니다.<sup>8)</sup>

태국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법적 요구 문서 및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 포장허가서(Cabinet authorization, 재수출의 경우)
- 견적서(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운송 영수증
- 운송허가서(Removal Pass)
  - \* 산림부에서 발행한 사유지 목탄 인증서 또는 별도의 운송 서류
- 원목에 표시된 표식(Timber mark)
- 산림부에서 발행된 목재, 제재목, 목재제품, 목탄 인증서
- 500,000 baht 초과금액에 대한 국외거래서식(Foreign Transaction Form (Form Tor. Thor. 1))

8) Timber Flows and Their Control in Thailand, p27, [www.euflegt.efi.int](http://www.euflegt.efi.int)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Trade)에서 발급한 수입, 수출 등록증
-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 영수증(Payment receipt)



##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Montri Intasen
- 소속 : Royal Forest Department,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전화번호 : + 662 - 561 - 4292 - 5673
- e-mail : b\_willam@hotmail.com